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2-99
----------	-------

2022. 9. 23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남해석 의원 외 7명
- 나. 제 안 일 : 2022. 9. 8.
- 다. 회 부 일 : 2022. 9. 14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 위원 의 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규정함
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- 입법예고 : 2022. 9. 13.~ 9. 19. 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관련 조례의 정비 사항 중 결산검사 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하는 차원의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.

<표 1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>

종 전	현 행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 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 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 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(시행 2022.1.13., 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전부개정)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구간을 “5명”에서 “7명”으로 하고 이 중 마포구의회 의원을 “1명”에서 “2명”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2항 검사위원의 자격을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”을 “거주 또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”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가 변경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하여 계수로 표시하는 행정행위로서 감사위원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와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은 지방재정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의 선임수의 증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.
- 마포구 재정 규모(2021년 세출 결산액 8,379억원)를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구의회의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 활동은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됨.
-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의도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권을 확보한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‘행정안전부’에서 개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지 않고 제한 범위를 둔 것은 아쉬움이 있으므로
- 향후에는 재정규모의 증감여부에 따라 지방의회 자율권 확보차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선정기준, 선임방법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 촉구가 이어져야 할 것임.
- 아울러, 결산검사 위원수의 확대에 따른 재무관리 관련 전문가(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) 확보를 위한 인력 pool 확보와 개정 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인 재무과에서는 치밀한 결산검사계획과 예산 편성을 해야 하겠음.

<표. 1.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규모별 검사위원 수 현황>

단체명	예산규모(백만원)	위원수	비고
마포구	763,614	5명	특정인원수
종로구	490,834	4명	특정인원수
중구	573,364	3-10명	선임구간
용산구	575,898	4명	특정인원수
성동구	659,831	3-5명	선임구간
광진구	732,324	3-10명	선임구간
동대문구	736,072	5명	특정인원수
중랑구	905,064	3명	특정인원수
성북구	882,413	5명	특정인원수
강북구	827,510	5명	특정인원수
도봉구	739,201	5명	특정인원수
노원구	1,144,501	3-5명	선임구간
은평구	1,011,000	4명	특정인원수
서대문구	690,838	5명	특정인원수
양천구	853,734	10명	특정인원수
강서구	1,156,996	5명	특정인원수
구로구	836,420	5명	특정인원수
금천구	622,602	3-5명	선임구간
영등포구	784,852	6명	특정인원수
동작구	739,477	6명	특정인원수
관악구	905,655	5명	특정인원수
서초구	793,862	6명	특정인원수
강남구	1,200,115	5명	특정인원수
송파구	1,064,155	4명	특정인원수
강동구	872,097	7명	특정인원수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